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28
----------	-----

2021. 9. 3.(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상돈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9월 3일

-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상돈 의원)

가. 제안사유

- 관급공사를 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현황을 관련 조례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별도의 실적평가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를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충청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실적평가 조항 삭제 (안 제11조)

○ 용어의 명확화

- 도→충청북도, 도의회사무처→충청북도의회, 도지사→충청북도지사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 규정함으로써→규정하여, 상호→서로, 신청 시→신청할 때,
- 사전에→미리, 임하여야→따라야, 계약체결 시→계약체결을 할 경우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관급공사를 할 경우 임금 및 임대료 지급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 별도의 실적평가는 불필요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상호”를 “서로”로, “신청 시”를 “신청할 때” 등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충청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방지하여”를 “방지함으로써”로, “보호함”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을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노동자”란”을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하루”를 “1일”로 한다.

1. “관급공사”란 충청북도(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주”를 “사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상호”를 “서로”로, “건설기계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를 “건설기계노동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및”으로, “노동자와노동계약”을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
대차 표준계약”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공검사 신청 시”를 “준
공검사를 신청할 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대가지급 시”를 “대가를 지급할 경우”로, “등 그 밖”을 “등”
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
우 지급한 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중 “임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자료”를 “자료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
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를 “홈페이지
에 게시”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2조) 중 “계약체결 시”를 “계약체결을 할 경우”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u></p>	<p><u>충청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u> 임금 체불 등을 <u>방지하여</u> 노동자와 하도급업체를 <u>보호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규정하여</u> ----- <u>방지함으로써</u> ----- <u>보호하는 것</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관급공사</u>”란 도(도, 도의 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관급공사</u>”란 <u>충청북도(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u></p>

2. ~ 5. (생략)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도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9. ~ 13. (생략)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6.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 -----

--.

7. “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란 -----
-----.

8. ----- 1일 -----

-----.

9. ~ 1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① -----

----- 사업체-----.

② -----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그 밖의 노동자와노동계약(「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자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노동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명단,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생략)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공무원은 하수급인 및 노동자 등에게 지

3.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
--- 서로 -----

건설기계노동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및 ----- 노동자와의 노동계약-----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 대
가를 지급할 경우 -----

급여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9조(노동자 상담) 도지사는 제8조의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 등 -----

----- 미리 -----.

②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한 날 -----
----- . 단,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노동자 상담) -----

----- 따라야 -----.

제10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

----- 자료제출 -----

-----.

② -----

홈페이지에 게시 -----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도
지사는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
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
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
로 관리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도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 시
도의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
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
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
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계약특수조건 반영) -----

계약체결을 할 경우 -----
-----.

제12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관련법령 발취

□ 근로기준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20호, 2020. 4. 7., 일부개정]

-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8.>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